CMS 출금이체신청서

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(앞)

수납기관명	관명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						·종류	ছা ।	비납부(CMS)
납부자주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. :				전	화번호	: (성 명		-
신청일자 신청일자 년 월 일 일 분 납부자번호(공란으로 작성하지 마세요.)								L.)	
0 9 ~ ※ 은 행 명		7)	정 출	. J 7	1 21 1	ਮੇ ਨ			예금주성명(한글)
× ± % %		^1	78 吾	р /1	1 4	킨 포			게 ㅁ ㅜ ~ 8 ~ 8 (인 된)
※ 은 행 코 드 (공란으로 작성하지 마세요)	(개인통정	ł)예금주	주민번호	호, (회사	ト통 장)	사업자변	:	음금일자	
							마	월15일	원
뒷면 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. 신청인 : ® 또는 서명									
◇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◇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귀하									
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(거래은행명, 지점명, 계좌번호)를 출금이체를 신규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의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.									
	20	0 년	월	일	Q 3	E는 서명	:		

출금이체신청서(뒷면)

출금이체 약관

- 1. 앞면의 본인(예금주)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 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.
- 2.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 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.
- 3.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 습니다.
- 4.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
- 5.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 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.
- 6. 출금이체 신청(신규, 해지)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7.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.
- 8.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.
- 9.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.
- 10.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.

동의서 작성 관련 설명

- 1. 납부자 주소 및 성명 : 회원사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
- 2. 신청일자 : 동의서 작성일자
- 3. 납부자번호 : 금융결재원에서 자동번호 부여하므로 작성하지 마세요.
- 4. 은행명 : 거래은행명
- 5. 지정출금계좌번호 : 거래은행통장계좌번호
- 6. 예금주성명 : 예금주성명
- 7. 은행코드 : 각 은행별코드이므로 공란으로 작성하지 마세요.
- 8. 개인통장일 경우 예금주 주민번호를 작성해 주시고, 법인(회사)통장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해 주세요.
- 9. 출금일자 : 매월 15일에 출금됩니다.
- 10. 출금금액: 아래에 따라 금액 작성해 주세요. (회원 가입시, 북측근로자수 표시 요망)

회비를 북측근로자 수별로

- 1~150명 → 월 5만원, 151~500명 → 월 10만원, 501명~1,000명 → 월 20만원, 1,001명~1,500명 → 월 30만원, 1,501명~2,000명 → 월 40 만원, 2,001명 이상 → 월 50만원
 - ※ 예정 회원 → 월 5만원
 - ※ 근로자수 변동을 감안하여, 매년 1월 기준으로 1년간 시행
- 임원의 회비는 정회원 회비 산정액과 다음 정액회비 중 높은 회비
- 회 장 : 200만원/월, 명예회장 : 50만원/월, 고 문 : 30만원/월, 수석부회장 : 100만원/월, 부회장 : 50만원/월, 감 사 : 30만원/월, 이 사 : 30만원/월